

Issue Comment

2018. 4. 2

두산인프라코어 042670

DICC 소송 우려에 따른 주가하락은 과도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 6098-6699
hyun.kim@meritz.co.kr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DICC) 추가 소송과 관련한 우려로 주가 급락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의 매각 실패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 측을 상대로 7,093억원 규모의 추가배상을 요구하는 '잔부청구 소송'을 제기. 2월 21일 2심에서 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FI에게 145억원(청 구금액 726억원 중 원금 100억원과 이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사측은 2월 26일 대법원에 상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 의한 강 제집행을 정지시킨 상황. 반면 FI 측은 2심에 그치지 않고, 원금 3,8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7,093억원의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짐.

그러나 FI 측은 아직 약 25억원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정식적인 소송 절차를 끝지 않은 상황으로 보임. 인지대를 납부해야만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은 수일 내로 '인지보정 명령'을 통해 인지대를 납부하면 적법한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임. 만약 인지대를 기일 내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기각됨.

인지대 납부 후 추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동일 안건으로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동시이행(상환급부) 관계에 해당, 최종 판결 이후에나 추가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 대법원 판결까지는 1~3년까지 걸릴 수 있는 사안으로, 당장 추가 소송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로 불거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또한 원금 3,800억원에 이자를 포함한 총 7,093억원의 소송가액을 모두 배상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FI 측이 승소를 하더라도 7천억원 수준의 매매대금은 과대 계상으로 판단. 두산인프라코어의 2017년말 별도기준 보유현금은 3,434 억원,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자산은 2조 1,669억원(두산밥캣 1조 6,496억원, DICC 2,568억원)이며 단기차입금은 1조 1,224억원. 따라서, 언론에 불거진 DICC 추가소송 우려에 따른 10% 이상의 주가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함.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4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4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4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